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465
----------	-----

2019년 4월 24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3월 5일, 김희걸 의원 (찬성자 16명)
- 나. 회부일자 : 2019년 3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19년 4월 24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희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2014년 세월호 참사, 2016년과 2017년의 경주·포항 등 동해안 지역 지진, 2018년 용산구 상가 붕괴 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시민의 대처능력 확보가 강조되고 있음.

시민안전체험관은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해 시민의 재난 및 위기 대처 능력을 증진할 수 있으나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은 광나루(광진구) 및 보라매(동작구)의 2개소에 불과함. 특히 건립 추진 중인 시민안전체험관 또한 동북권(방학동)에 소재할 예정으로,

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임.

따라서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향후 시민안전체험관이 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체험관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(안 제2조).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, 「소방기본법」 제5조1)에 따라 운영되는 시민안전체험관이 현재 2개소에 불과하여 원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, 이용시민들이 근거리 지역 주민들로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,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안전체험관을 접근성을 고려한 권역별 조성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.

1) 제5조(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)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, 시·도지사는 소방체험관(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,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■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현황

- 현재 소방재난본부는 시민들이 가상재난의 체험 및 안전교육을 통해 각종 사고로부터 올바른 예방과 대처가 가능하도록 안전의식 및 재난대처능력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‘광나루안전체험관’과 ‘보라매안전체험관’을 운영 중에 있음.
- ‘광나루안전체험관’은 광진구 능동로에 2003.3.6 건립되어 현재 상시근무자 29명과 연간운영비 12억 원(2019년도 기준)이 투입되면서 일평균 530명의 안전체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으며,
- ‘보라매안전체험관’은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에 2010.5.25 건립되어 상시근무자 30명과 연간운영비 2억원(2019년도 기준)이 투입되어 일평균 480명의 안전체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음. ([표] 참조)

[표] 시민안전체험관 주요 현황

구 분	광나루안전체험관	보라매안전체험관
개관일	2003. 3. 6.	2010. 5. 25.
위 치	광진구 능동로 238 (어린이대공원 옆)	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(보라매공원 내)
시설규모	3/1층, 연면적 5,444.5㎡, 대지 5,041㎡	3/1층, 연면적 8,020㎡, 대지 4,753㎡
시설건립 총 비용	205억 4,900만원	414억 5,200만원
연간운영비 (2019년)	12억원	2억원
이용대상	어린이 층 (6세이상)	청소년 이상 (14세 이상)

상 시 근무자수	[총 29명] ▷ 운영분야 : 13명(소방 7, 용역 6) ▷ 청사관리 : 8명(공무7, 촉탁1) ▷ 사회복지부 : 8명(안전관리 등)	[총 30명] ▷ 운영분야 : 15명(소방 15) ▷ 청사관리 : 9명(공무 6, 촉탁 3) ▷ 사회복지부 : 6명(안전관리 등)
체험코스별 소요시간	▷ 재난체험 : 2시간 ▷ 전문체험 : 1~3시간 (※ 응급처치실습) ▷ 교통체험 : 1시간 ▷ 자유관람 : 시간제한 없음 (※ 새싹어린이안전체험, 나도소방관 등)	▷ 재난체험 : 2시간 ▷ 전문체험 : 1~3시간 (※ 소방시설실습, 응급처치실습) ▷ 어린이 : 1시간 ▷ 자유관람 : 시간제한 없음 (※ 소방역사박물관, 어린이안전체험장)
체험관 이용방법	사전 예약(인터넷 또는 전화) + 자유관람	사전 예약(인터넷 또는 전화) + 자유관람

- 더욱이 ‘세월호사고’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족단위 및 노인계층 체험객,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업체의 자발적인 안전교육 참여 등 전계층·전연령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.
-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안전체험관의 접근성에 따른 지역편차 등을 고려하여 ‘(가칭)동북권 안전체험관(도봉구)²⁾’과 ‘(가칭)서북권 안전체험관(은평구)³⁾’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 각각 도봉 소방학교 이전부지와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과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.([그림] 참조)

2)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9호, 동북권사업단-7183, 도봉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 계획, 2018.08.16
3) ‘서북권 안전체험관(은평구)’은 안전총괄본부에서 추진(‘18.12~’19.5(6개월간)) 중인 ‘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’에서 시민안전체험관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음.



[그림]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위치도

■ 시장에게 권역별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노력의무 부과에 대한 의견 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, 시장에게 시민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시민안전체험관을 조성토록 하는 노력의무를 신설하면서 그에 따라 조례체계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[표 1] 현행 및 개정안 조문대비표(안 제2조)

현행	개정안
<p>제2조 (설치 및 기능)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(이하 "체험관"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, 그 기능은 일반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2조 (설치 및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정한다.</p> <p>②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체험관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</p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3조 (개관 및 휴관) ① (생 략)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 략) 3. <u>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정하는 휴관일</u> ③ ~ ⑥ (생 략)</p>	<p><u>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체험관은 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.</u></p> <p>제3조 (개관 및 휴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시장</u>----- 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- 최근 3년간 각 체험관별 자치구민 방문통계 현황을 살펴보면, 광나루시민안전체험관 및 보라매안전체험관 각각 388,550명과 381,650명이 방문하였고, 그 중 가장 근접한 광진 주민과 동작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체험관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일수록 이용률 역시 높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음.



[그림] 체험관별 자치구민 방문통계 현황 (광나루: 388,550명 / 보라매: 381,650명)

- 따라서, 서울시가 추가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동부권 안전체험관과 서북권 안전체험관은 명목상으로나마 권역을 고려하고 있다

는 점에서 본 개정안과 지향점을 같이한다 할 것이나,

- 이는 명목상의 권역 구분일 뿐, 진정한 권역별 운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어느 경계선까지를 실질적인 권역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음.
- 이를 위해, 현재 검토 중인 신규 안전체험관과 기존 보라매와 광나루 체험관 모두를 포함하면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편의성, 접근성, 예상 이용객 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권역 범위와 개수를 정하고,
- 이에 따른 권역별 인구변동 및 이용객 추이에 따라 일정 주기로 권역 경계를 탄력 조정함으로써 어느 한 권역에 편중되지 않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수월하게 안전체험관을 수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은 시장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희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46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5일

발 의 자 : 김희걸, 황인구, 문장길, 김소양,
김용연, 채유미, 최기찬, 이승미,
이정인, 송명화, 추승우, 이태성,
김인호, 권수정, 김정환, 김종무
의원 (16명)

1. 제안이유

2014년 세월호 참사, 2016년과 2017년의 경주·포항 등 동해안 지역 지진, 2018년 용산구 상가 붕괴 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시민의 대처능력 확보가 강조되고 있음.

시민안전체험관은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해 시민의 재난 및 위기 대처능력을 증진할 수 있으나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은 광나루(광진구) 및 보라매(동작구)의 2개소에 불과함. 특히 건립 추진 중인 시민안전체험관 또한 동북권(방학동)에 소재할 예정으로,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임.

따라서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향후 시민안전체험관이 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체험관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(안 제2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정하며, 그 기능은 일반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”를 “정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체험관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체험관은 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중 “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설치 및 기능)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(이하 "체험관"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, 그 기능은 일반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 (설치 및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정한 다.</p> <p>②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체험관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체험관은 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.</p>
<p>제3조 (개관 및 휴관) ① (생략)</p> <p>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</u>이 정하는 휴관일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제3조 (개관 및 휴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시장</u>----- -----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이번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(설치 및 기능)에서 권역별 설치를 시장 재량사항으로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제2조(설치 및 기능)의 권역별 시민안전체험관의 구성에 따른 1개 시설 추가 설치 비용

나. 전제

- 권역은 발의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서울시를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함
- 현재 운영 중인 ①광진구 광나루안전체험관과 ②동작구 보라매안전체험관 그리고 설치 중인 ③도봉구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등 3개를 제외하고 서북부에 1개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가정(시장 재량사항임)
- 부지의 크기, 시설 규모, 설치 절차 등은 기존의 체험관 및 설치 중인 체험관의 사례를 참고함
- 해당 부지는 나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
- 토지 보상과 설계 공모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봄
- 공사 선급금은 전체 공사비 중 10%로 가정하고, 나머지 공사비는 3년에 걸쳐 균등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
- 유지관리비는 최근 운영에 들어간 보라매안전체험관 예산을 적용
- 그밖에 사업규모의 확대, 인건비 인상, 물가상승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

다. 추계기간 : 시행 후 8년(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발생)

라. 방법 :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및 지역발전본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= 8년간 **520억 83백만원**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, **연평균 65억1천만원**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0)	2차년도 (2021)	3차년도 (2022)	4차년도 (2023)	5차년도 (2024)
세입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
세출	기본계획 등	80,000	110,000	-	-	-
	토지보상비	-	-	19,311,201	-	-
	공사비	-	-	-	-	7,191,428
	시설부대경비	-	-	90,000	991,748	189,786
	설계공모	-	-	90,000	-	-
	조사비	-	-	-	-	179,786
	설계비	-	-	-	882,748	-
	설계경제성	-	-	-	99,000	-
	시설부대비	-	-	-	10,000	10,000
	운영설비비	-	-	-	-	-
	유지관리비	-	-	-	-	-
	소계(b)	80,000	110,000	19,401,201	991,748	7,381,214
□ 총 비용(b-a)		80,000	110,000	19,401,201	991,748	7,381,214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6차년도 (2025)	7차년도 (2026)	8차년도 (2027)	합계
세입	-	-	-	-	-
	소계(a)	-	-	-	-
세출	기본계획 등	-	-	-	190,000
	토지보상비	-	-	-	19,311,201
	공사비	5,393,571	5,393,571	-	17,978,570
	시설부대경비	10,000	11,351	-	1,292,885
	설계공모	-	-	-	-
	조사비	-	-	-	-
	설계비	-	-	-	-
	설계경제성	-	-	-	-
	시설부대비	10,000	11,351	-	-
	운영설비비	-	13,100,000	-	13,100,000
	유지관리비	-	-	210,588	210,588
	소계(b)	5,403,571	18,504,922	210,588	52,083,244
□ 총 비용(b-a)		5,403,571	18,504,922	210,588	52,083,244

4. 덧붙이는 의견

○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남승우
사업평가팀장	여차민
예산분석관	한기백

☎ 02-2180-7952
e-mail : hophan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서북권 시민안전체험관의 추가 설치비용(안 제2조)

2. 세부추계내역

가. 기본계획 등

- 방침 수립 : 6개월
-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 : 18개월
 - 기본계획 용역, 타당성조사 의뢰 및 시행, 시 및 중앙 투자심사 등
 - 소요비용 : 1억 9천만원(진행 중인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의 경우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용역비용은 8천만원으로,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인 1억1천만원으로 가정함)
- 설계 공모 및 용역 시행 : 18개월
 - 설계 공모 : 6개월
 - 설계 용역 : 12개월
 - 설계 공모 비용 : 9천만원(설계비의 10%, 3차년도에 집행)

나. 시설규모 가정

- 연면적 : 8,400m² (지역발전본부 의견)
- 토지면적 : 4,161m² (지역발전본부 의견)
 - 지상층 연면적을 기준으로 용적률 150%로 가정
- 공사기간 : 3년

다. 토지 보상비 산출

- 토지보상비 : 토지면적 × 단위당 토지가격(지역발전본부 제공)
= 4,161m² × 4,641천원/m² = 19,311,201천원
- 보상기간 : 1년

라. 설계비 및 공사비 산출

- 공사비 : 17,978,572천원(부가세 포함, 지역발전본부 제공)
- 시설부대경비 :
 - 지역발전본부에서 공사비(VAT 제외)를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 적용
 - 설계비 : 882,748천원(4차년도에 집행, 지역발전본부 제공)
 - 조사비 : 179,786천원(5차년도에 집행, 지역발전본부 제공)
 - 건설사업관리비 : 1,335,808천원 (지역발전본부 제공)
 - 설계경제성 검토비 : 99,000천원(4차년도에 집행, 지역발전본부 제공)
 - 시설부대비 : 41,351천원 (지역발전본부 제공)
- 운영설비비 : 13,100,000천원 (지역발전본부 제공)
- 공사기간 : 3년
- 집행일정
 - 첫째(5차)년도 : 선급금 공사금액의 10%와 당해 연도 비용 집행
 → 7,191,428천원 = (17,978,572천원 × 10%) + 5,393,571천원
 - 둘째(6차)년도 : 선급금 제외 공사금액을 3년 균등 집행
 → 5,393,571천원 = (17,978,572천원-1,797,857천원) ÷ 3년
 - 셋째(7차)년도 : 선급금 제외 공사금액을 3년 균등 집행
 → 5,393,573천원
 = 17,978,572천원 - 7,191,428천원 - 5,393,571천원

마. 운영설비비

- 콘텐츠 비용 : 13,100,000천원(지역개발본부 제공)

바. 시설부대비

- 시설부대비 : 41,351천원(지역개발본부 제공)
 - 매년 10,000천원씩 투입하고 4차년도에 잔액 투입

사. 유지관리비 산출

- 단위면적 당 유지관리비 : 25.07천원/m² = 201,080천원 ÷ 8,020m²
 - 보라매안전체험관 사례 적용
- 연간 유지관리비 : 210,588천원 = 25.07천원/m² × 8,400m²
 - 공사 완료 다음연도인 8차년도부터 발생

※ 첨부 : 1. 사업 추진절차와 사업비 현황(지역발전본부 제공)
 2. 보라매안전체험관 2019년 유지관리 예산(소방재난본부 제공)

추진절차

(단위 : 천원)

구분	기간	금액	비고
기본계획 수립 용역	12개월	120,000	
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	-	-	
타당성조사(지방행정연구원)	8개월	180,000	대상 :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(토지비 포함) 의뢰 : 1월, 4월, 8월 기간 : 약정체결 후 최소 6개월 (약정체결은 의뢰 후 1~2개월 이내) 기본수수료 : 110,000천원 부가수수료 : 70,000천원
시 투자심사	2개월	-	대상 :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의뢰 : 1월, 3월, 5월, 7월 심사 : 3월, 5월, 7월, 9월
중앙 투자심사	2개월	-	의뢰 : 1월, 4월, 8월 심사 : 3월, 6월, 10월
공유재산심의회	-	-	타당성조사, 투자심사와 병행 가능
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	-	-	예산 의결 전 완료
예산편성	-	-	
설계공모	6개월	-	예정설계비의 10%
기본 및 실시설계	12개월	-	
공사	-	-	

자료 : 지역발전본부

총사업비(연면적 8,400㎡ 기준)

(단위 : 천원)

항목	금액	비고
공사비	17,978,572	부가세 포함
보상비	19,311,201	4,161㎡ (4,641,000원/㎡)
시설부대경비	2,538,693	
설계비	882,748	공사비(부가세 제외) : 16,344,156천원 효율(보통, 상급) : $5.0 - (164 - 100) \times (5.0 - 4.85) / (200 - 100) = 4.91$
조사비	179,786	[공사비(부가세 제외) × 1%] × 1.1
철거비	-	
건설사업관리비	1,335,808	공사비(부가세 제외) : 16,344,156천원 효율(보통) : $8.52 - (164 - 100) \times (8.52 - 6.81) / (200 - 100) = 7.43$
설계의 경제성(VE) 검토비	99,000	
시설부대비	41,351	공사비(부가세 제외) : 16,344,156천원 효율 : 0.23
운영설비비	13,100,000	콘텐츠 비용
예비비	2,051,727	(공사비+시설부대경비) × 10%
총사업비	54,980,193	

자료 : 지역발전본부

□ 2019년도 예산현황(보라매안전체험관)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예산액	세부내역	배정금액
계	201,080		
기간제근로자등보수	106,780	청소분야 촉탁직 인건비	106,780
사무관리비	38,400	체험관 운영 소모품 구입 등	38,400
공공운영비	55,900	냉온수기 세관 등	5,500
		체험관 청사시설 유지비 등	14,100
		무인경비시스템 용역	2,500
		영업배상책임보험	2,800
		체험시설 장비 유지관리 등	26,000
		승강기 유지보수	5,000
자산및물품취득비	20,000	체험관 구급교육용 마네킨 구매	20,000

자료 : 소방재난본부